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 세무담당부서(장)

제 목 「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」 개정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세청 고시 제2021-11호로 개정·공포된 「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」의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 및 고시의 전문은 우리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 「법령 제·개정 자료실」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참고사항

우리 렌터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 의무 업종이 아니지만,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 경우에는 동 고시가 적용됨을 안내해드립니다.

※ 붙임 : 「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」 전문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: 회원사 전체

담당자	주임	부장	실장	상무	이사장
	박종우	김진석	박상광	성정현	배준영
시행	서자대조21-471	(2021.05.18)	접수	-	()
우	06704	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 4(방배동, 프린스효령빌딩 2층)	/ www.scra.or.kr		
전화	(02) 525-9076	전송	(02) 525-9063	/ scra@scra.or.kr	/ 공개

[붙임]

국세청고시 제2021-11호(2021.5.14.)

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

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3,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 및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4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5월 14일

국 세 청 장

제1조(현금영수증의 발급)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, 승인일자,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.

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10조의3제12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“01000001234”로 발급하여야 한다.

제2조(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)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
1.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: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·천정(천정걸이 사용)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

2.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: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

제3조(추가요금)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제4조(금지행위)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1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

2.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

3.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
4.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
5.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
6.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

제5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5월 13일까지로 한다.

부 칙(2021.5.14. 국세청고시 제2021-11호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

구 분	규 격	포함될 문구
의무발행 가맹점	가로160mm × 세로100mm ± 30%	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
일반 가맹점	가로125mm × 세로100mm ± 30%	현금영수증 가맹점

- 1)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
- 2)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 외 현금영수증가맹점